

## 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 그리고 현행법의 상생 가능성

이 영 대\*, 김 규 린\*\*

### 요약

정보기술과 콘텐츠가 만난 전자책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 전자책 시장은 하나의 융합된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 세계 각국이 전자책 산업의 가능성과 성장세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신(新)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도약을 준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시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콘텐츠의 수집, 활용 전략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행과 관련된 법제도적 쟁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구글북서치(Google Book Search)와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로피아나(Europeana)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디지털도서관은 분명 엄청난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국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경제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디지털도서관, 저작권, 전자출판, 출판권, 판면권

## The Possibility of E-Books' and Digital Libraries' Coexistenc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Young-Dae Lee, Hanah Kim

### Abstract

The world is focusing on e-books as the e-book market is growing rapidly as a fused industry at the crossroad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 content. Many countrie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is new market and leveraging on its potential and growth, while Korea's market is still in its preliminary stage. There is a good reason to be concerned over the fact that access to digitalized materials that are the most relevant to the current time are not readily available. Therefore, the strategy in collecting and utilizing content must be newly refurbished. In order to do this, the legal issues and policies related to digital libraries must be considered. The most relevant examples from abroad are Google Book Search and the EU's Europeana project. Then, what are the necessary measures for Korea to materialize its own digital library? Digital libraries can significantly influence social welfare and bring forth economic effects. Social preparation surrounding this subject should continue to increase because digital libraries will change the manner in which people share and use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egal and economic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digital libraries as well as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Keywords: copyright, digital library, digitalized materials, publication right, typographical arrangement rights

2011년 11월 11일 접수, 2011년 11월 14일 심사, 2011년 12월 26일 게재확정

\*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pydl@unitel.co.kr)

\*\* 법무법인 수호 연구원(gyule.kim@gmail.com)

## I. 서론

시대적 조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 행동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고 만다. - 폴 앨런 (Paul Allen)

책이라는 정보의 매체와 그 매체의 집합소인 도서관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5세기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Gutenberg)가 발명한 금속활자 인쇄술은 책의 인쇄를 용이하게 하여 당시 유럽에서는 가치 정보의 폭발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속도의 정보의 확산을 경험했다. 21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못지않은 출판에서의 혁명이 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책(Electronic Book, E-Book)인 것이다. 오로지 전자 신호와 입력 장치로써 스크린에 문자가 표시되는 전자책의 가능성은 지금 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전자책의 보급은 정보의 확산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 같은 것이다. 이처럼 정보기술과 콘텐츠가 만난 전자책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고 전자책 시장은 하나의 융합된 산업으로 급부상 중이다(Lesk, 1997: 6-7).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책의 시장 성장률은 매년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2013년까지 전자책 시장은 89억 달러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큰 규모의 전자책시장과 IT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2010년 전자책 실질수입만 8억7천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1000%가 넘는 증가율(AAP, 2010)<sup>1)</sup>이라는 사실만 봐도 전자책 시장의 급성장 추세를 알 수 있다. 유럽 전자책 시장도 마찬가지로 53%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시장이 정부의 주도하에 법제도의 정비나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두 시대의 조류의 핵심에 서있는 전자책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디지털타임스, 11/05/31).

이처럼 세계 각국이 전자책 산업의 가능성과 성장

세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신(新)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추이는 규모가 1300억 원에 불과하고 전자책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들은 다수 시장형성에 실패하여 국내 시장은 아직은 도약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산은경제연구소, 2009: 1-5).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는 만화와 장르소설을 제외하면 10만 권도 채 안 되는데 이는 미국의 천 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전자도서들의 출간시기를 고려한다면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대부분 일반 책으로 출간된 지 1년이 지나서야 디지털화 되고 있다. 물론 신간 경쟁만이 전자출판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기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콘텐츠의 수집 전략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책이나 자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콘텐츠의 제공을 위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 도서관의 시행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구글북서치(Google Book Search)를 들 수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40-42). 지난 2004년부터 향후 10년 내에 3200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스캔하여 온라인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2009년 말에 전 세계 주요 도서관 장서를 비롯해 1,000만 권에 달하는 서적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다. 구글(Google)사의 프로젝트는 저작권논란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기는 하나 이용자들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성의 취지는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맞서 대응하는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로피아나(Europeana)도 예로 들 수 있는데(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90-93), 구글북서치와는 달리 유로피아나는 공공주도의 전자도서관이지만 그 설립목

1) 미국 출판인 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결과 목표는 같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디지털도서관은 분명 엄청난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이다.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글은 국내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경제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전자책 출판 법적 쟁점: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긴장과 조화

### 1. 현행법상 '출판권'의 의미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와 도서 등의 디지털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다. 전자책이 안고 있는 저작권법상 문제점의 근간은 “출판권”과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즉,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에 전자출판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전자책에 출판권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행법은 출판에 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출판권의 설정에 관한 저작권법 제 57조 1항<sup>2)</sup>에서 출판이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행위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문서나 도화”의 법적 개념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그 밖의 부호에 의해 일정한 의사표시를 지속성 있게 표현한 유형물이고, 도화란 그림을 그려 유형물 위에 지속성 있게 일정한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문서에

속한다(김증한, 1999: 442, 514-515).

나아가 저작권법상의 출판계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이다(김기태, 2001: 131-132). 출판허락계약은 이용허락계약으로서 권리와 이용자 사이의 채권계약의 성격을 띠므로 제3자가 권리를 침해할 시 권리자만이 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이용자는 권리자의 처분에 따라 간접적인 구제만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주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데,<sup>3)</sup> 이는 저작권자와 출판자간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을 말한다. 출판권설정계약을 통해 출판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및 배포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복제 및 배포권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계약은 출판권자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출판사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

그러면 저작권법상 전자출판의 자리는 어디인지 파악해야 하는 임무가 남아있다. 전자출판의 본질은 아날로그 정보인 종래의 종이서적을 디지털 형태의 전자책으로 바꾸는 것, 이러한 ‘전자출판’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출판과 출판권의 설정은 적용 가능한지 살펴볼 차례이다.

### 2. 현행법상 '전자출판'의 의미

전자책은 유일한 법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기존의 종이책과는 달리 컴퓨터 파일 형태의 출판물을 영상장치(Viewer)를 통해 컴퓨터나 단말기 등으로 읽는 디지털 출판물

2) 제57조(출판권의 설정(개정 2006.12.28))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3) 제57조(출판권의 설정(개정 2006.12.28)) ①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곽동철, 2000: 15-16). 앞서 얘기한 저작권법상 출판의 정의에 따르면 문서나 도화의 개념에는 유형물이 거론된다. 그러므로 컴퓨터 입력장치를 통해 스크린과 같은 시각영상장치에 투영되는 의사표시는 엄밀히 말해 문서가 아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전자문서’도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1999년 발효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한 해석이다(박성호, 2002: 916-917). 즉, ‘전자출판’도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전자출판’이 발행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뜻하고,<sup>4)</sup>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다. 복제와 발행의 정의에서 유형물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출판은 현행법에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상에서의 출판이 아니게 된다(김문환 외, 2001: 463-468).

그렇다면 전자책이 저작권법상의 출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부응하여 전자출판에는 출판권설정 계약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출판”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기에 핵심적인 행위인 “출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영향 받는 전자출판의 이해당사자들은 3자로서 저자, 출판사, 그리고 전자출판 서비스업자 라고 할 수 있겠

다. 전자출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이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각각의 관계자들의 어떠한 권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 3. 전자출판계약에서의 권리 문제

#### 1) 판면권의 문제

기존의 출판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판면권’이 있다. 판면권이란 저작물의 인쇄배열(Typographical Arrangement)이나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권리로서 권리가 미치는 대상은 출판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면(쪽, 페이지)의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일반적인 외관 등이다(이대희, 2000: 9-10). 판면권은 출판자 또는 발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국내 현행법상으로 판면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6조<sup>5)</sup>에서 편집저작물에 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백과사전이나 잡지와 같은 편집물의 출판물인 경우 출판자의 소재 선택과 인쇄배열 등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그 편집저작물은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편집물에 해당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은 한정적이고, 대법원에서는 편집물의 창작성을 좌우하는 소재의 선택 또는 인쇄배열 등을 상당 부분 복제하지 않았다면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sup>6)</sup> 곧, 단순히 일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편집저작권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판면권’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저작권법에서 판면권에 대한 명시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는 적잖이 접할 수 있다. 우선, 영국에서는 출판사의 기술과 노동이 들어가 이미 출판된

4) 제2조(정의)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 제6조(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참조

작품의 판면적 디자인을 다른 출판사들이 함부로 복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956년 영국 저작권법(British Copyright Act 1956)에서 판면권을 소개하게 되었다. 발행물의 인쇄배열(Typographical Arrangement) 자체에 대하여 출판자에게 저작권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쇄배열은 작품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출판물을 일컫는다. 결론은 판면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권리는 출판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7)</sup> 독일저작권법은 판면배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문서나 저작권이 이미 소멸한 미발행저작물을 학술적 연구 활동 또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발행한 자에게 ‘학술적 판본(Scientific Edition)’ 또는 ‘사후 저작물(Posthumous Works)’의 보호라는 제목 하에 특별한 권리를 인정<sup>8)</sup>하고 있어 출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국의 사례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1993년 ‘저작권 및 일정한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조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4조와 제5조에서 판면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sup>9)</sup> 중국도 2001년 10월 27일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판면권 조항을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판면권을 ‘제판권(製版權)’이라는 표현으로 보호하고 있다(박익순, 2009: 32-41). 일본에서는 저작권심의회에서 1990년 출판물의 판면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 출판자의 보호를 권고하는 보고서<sup>10)</sup>를 발표할 바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는 출판자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판면권’이 전자출판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출판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다. 출판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노력의 산물로서 판면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출판자

의 노력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출판사의 기술과 노동이 소요된 출판물의 판면이 그 노력에 대한 대가없이 전자출판으로 재구성된다면 출판사들의 판면상의 창작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 과연 출판업계에 전자출판에 대한 동기부여를 얼마만큼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전자출판의 활성화에 있어서 출판업자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이기에 판면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허희성, 2007: 344-346)는 타당해 보인다. 전통적인 출판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출판업자들이 종이책을 전자화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다.

## 2) 설정출판권의 문제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전자출판을 허용하는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체결한 출판권설정계약과의 마찰이 생긴다. 이전에 출판권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임의로 새로운 형태의 이용, 즉, 전자출판을 출판권설정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아닌 전자출판 서비스업체에게 허락한다면 출판권자로서는 이에 저항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전자출판은 출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자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정 하에 이뤄진 전자출판이라면 모르지만 선불리 전자출판을 허용하면 출판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안전정치 역할을 하던 출판권설정계약은 그 기능이 전자출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용 앞에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출판사들은 사실상 권리를 상실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설령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 내용에 전자출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앞서 논의된 저작권 법상의 출판과 출판권 설정의 범위에 따르면 이러한

7) UK Copyright Law 1(1)(c), 8(1), 9(2)(d) 참조

8) Urheberrechtsgesetz (UrhG) Part II, §1, Article 70, Article 71 참조

9) EU Council-Term Directive (93/98/EEC) of 29 October 1993: harmoniz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 OJ L 290, 1993.11.24, pp.9-13 참조

10) 「出版者の保護關係 報告書」, 著作権審議會, 文化廳, 1990 참조

조항은 단순히 출판의 허락(이용허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행법상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 출판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저작자, 출판사, 전자출판 서비스업자 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은 발생한다. 출판업계에서 전자출판을 위해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형태는 저자, 출판사,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업체 3자의 이해당사자간의 계약 형태이다(백원근, 2001: 36-37). 전자출판 서비스업체가 출판사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가 저작자와 '전송권'<sup>11)</su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형태의 핵심은 결국 전자책과 관련된 콘텐츠의 판매에 따른 이익의 분배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이익배분의 문제는 위 3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인 만큼 항상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자책과 관련된 이익의 배분은 먼저 전자출판 서비스업자와 출판사의 계약에 따라 전체 배분이익이 정해지고, 그 후 출판사가 전자책 서비스업체로부터 받은 배분이익을 저작자와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3자 계약관계에서는 전송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절한 이익분배구조까지 고려해야만 한다. 더불어 출판사가 궁극적으로 저작자와 전자출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점, 전자출판은 이용허락에 국한되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의 세부사항과 조건을 재조정하고 합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결국 전자책의 탄생과 발달은 이러한 출판과 출판계약의 관계가 현시대의 필요에 맞게 법률적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출판허락계약에 전자책의 출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 없이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있다. 출판계약의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계약 대상으로 명시한 사항이 아니라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박성호, 2002: 918-919). 미연방제2항소법원은 1999년 9월 24일 신문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연방대법원에서도 같은 판정을 하였다.

#### 4. 사례연구: 전자출판계약의 법적지위

##### 1) New York Times Co. v. Tasini New York Times Co. v. Tasini<sup>12)</sup>

위 사안은 기존의 인쇄매체에 기고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각 개별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하는지에 관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원고들이 글을 게재한 인쇄매체의 운영자인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신문 등에 게재되었던 원고의 글을 전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자인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사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유엠아이(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UMI)사에 대하여는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디롬(CD-Rom)으로 제작 판매하도록 하였다. 렉시스넥시스와 텍스트 방식의 시디롬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원고들의 기고문이 게재된 간행물의 다른 기사들과는 별도로 원고들의 기고문만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미연방제2항소법원에 이어 미연방대법원도 피고들(신문사나 잡지사들)의 글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렉시스넥시스 전자데이터베이스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

11) 저작권법 제2조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2) New York Times Co. v. Tasini 533 U.S. 483 (2001)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데이터베이스는 개별적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방 저작권법 제201조(c)<sup>13)</sup>에 의하여 집합적 저작물로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2) Random House, Inc. v. Rosetta Books LLC<sup>14)</sup>

기존 출판계약의 효력이 전자출판에까지 미치는가 여부에 관한 미국의 사례에서 전자출판권(Electronic Right)은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출판사가 구입한 출판권은 프린트물에만 해당되며 전자형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판시된 바 있다.

2001년 3월 세계 최대 영어권 오프라인 출판사인 랜덤하우스(Random House, Inc.)가 전자책 판매 업체인 로제타북스(Rosetta Books LLC)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은 로제타북스가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전자출판계약을 체결한 후 전자책을 출판하자 이미 출판된 책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인 랜덤하우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러한 전자책의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구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미 법원의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허용허락을 위한 합의의 해석은 주 계약법의 문제이다. 만약 계약의 문언이 모호하다면, 계약의 해석은 사실의 문제가 된다. ‘작품을 인쇄하고, 출판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는 작품을 전자책의 형태로 출판하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작가들이 사용 허락하는 것을 열거하여 권리를 부여한 것은 포괄적인 사용허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즉, 배타적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약상 전자출판권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이다.

## 3) 사례로 본 법적체계의 한계

전자책과 전자출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존의 출판사들은 전자책서비스를 경계하고 있고 쉽게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려고도, 관여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는 앞에서 보았던 전자책출판의 법적 지위가 확실히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의 사례의 결론을 보면 전자형태의 데이터베이스는 검색 범위를 개별적 문서로 좁힐 수 있다는 특성상 집합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판시되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면에서 프리랜스 기자들에게 이로운 법적 해석이나 공공의 이익을 봤을 때 전자출판을 저지하는 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신문사나 잡지사처럼 여러 저작물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매체는 그 데이터를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는 계약절차와 비용소모를 무시할 수 없으며 콘텐츠 제공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 광범위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서 출판권의 내용에 전자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전자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점차 전자도서관 등의 전자 형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므로 이처럼 전통적이지 않은 매체,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랜덤하우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 준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3자계약이 아닌 저자의 주도로 행해진 두 개의 다른 출판계약은 먼저 종이책으로 출판한 랜덤하우스 출판사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

13) 17 U. S. C. §201(c). “집합적 작품의 각각의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과 별개이며 각각의 부분에 대한 최초 저작권은 각각의 저작자에게 있다. 이러한 저작권 혹은 관련된 권리의 이동에 대한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는 그 특정 집합적 저작물과 그의 후속적인 집합적저작물에 대해서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4) Random House, Inc. v. Rosetta Books LLC, 150 F. Supp. 2d 613, S.D.N.Y., 2001., July 11, 2001.

도 있고, 출판업계가 전자출판에 대해 갖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랜덤하우스의 출판권에 전자출판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저자가 자유롭게 제2의 전자책 서비스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조치일 수 있다. 전자책출판사들에게도 좋은 콘텐츠에 대한 출판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자책에 대한 배타적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출판사 혹은 전자출판업자일 수도 있는) 출판권자가 권리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출판계약상의 한계는 전자책과 전자출판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며 입법론적,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요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뒤에 더 논의하겠다.

### Ⅲ. 디지털도서관 구축 법적 쟁점: 신(新)저작권법을 위한 모색

디지털도서관이라 함은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될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체이다(Arms, 2000: 1-2). 이 정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보가 “관리” 된다는 점이다. 한 회사의 재무제표만을 모은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도서관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모아 관리하는 정보의 집합체는 디지털도서관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보의 집합체에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고르고, 정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도서관의 기본 틀이다(이종문, 2004: 123-125). 그렇다면 디지털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된 전자출판과 더불어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 1. 디지털도서관 구축 시 거래비용 문제

디지털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 복제(Scan)하여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데, 디지털도서관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도서관 장서를 이용 가능하게 할 시 도서관의 소장도서 전부를 디지털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디지털 ‘도서관’으로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도서관 소장 도서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저작권자로부터의 저작물 이용허락과 그를 위한 협상 등에 드는 거래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자의 존재, 신원, 소재가 불명한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이다.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어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해답이 없는 지금 이러한 거래비용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은 더 어려워진다. 구글북서치와 유로피아나의 사례로 고아저작물 관련한 거래비용 문제의 처리를 살펴본다.

##### 1) 구글북서치 (Google Book Search)

구글북서치는 구글사가 포털사이트 구글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판물 전문검색서비스로서, 출판물 안의 전문을 대상으로 검색을 행할 수 있고, 검색결과로서 표시된 출판물 내용의 일부(저작물이 만료된 출판물이라면 전체)가 무료로 표시된다. 검색·표시되는 데이터는 구글사가 종이 출판물을 스캔한 것으로, 구글사가 2004년에 미국 대학도서관 등과 제휴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도서관 소장 출판물들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다.

미국 출판·저작권자 단체인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와 작가 단체인 Authors Guild는 구글이 진행하고 있던 서적전자화·전문검색 프로젝트 구글북서치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5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10월, 소송의 당사자인 AAP,



Authors Guild, 그리고 구글은 분쟁에 대해 화해를 발표하며 법원에 화해안을 제출하였고<sup>15)</sup> 다시 2009년 11월에 수정된 화해안<sup>16)</sup>을 제출하였다. 화해안에 의하면 구글북서치에서 구글은 일단 도서를 디지털 복제하고 이를 희망하지 않는 권리자로 하여금 구글에게 참여거절(Opt-Out) 통지를 하도록 한다. 고아저작물 문제의 핵심은 그 양이 방대하다는 것과 저작자의 소재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일일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입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거절(Opt-Out) 정책을 택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부담을 저작권자가 지도록 하여 천문학적인 거래비용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출된 화해안의 공정성 심리(Fairness Hearing)는 2011년 3월에 종료되면서 수정화해안은 기각되었고<sup>17)</sup> 전자서적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구글북서치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될 상황이다. 올해 3월 22일, 미국 뉴욕 남부 관할 지방 법원의 판사 데니 친(Chin)은 48 페이지의 판결문을 통해 “수정화해안이 공정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작성했으며, 반면, “책의 디지털화와 일반적인 디지털 도서관의 탄생은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만, 구글의 제안은 도를 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안은 구글에게 사실상의 독점(De Facto Monopoly)을 허용할뿐더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책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권리를 구글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친(Chin) 판사가 “공평하지 않다”고 판결한 이유다. 이로써, 미국작가협회 등이나 구글사는 화해안을 수정하여 재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므로 다시 제출되는 화해안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최종

적으로 어떻게 구글의 고아저작물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할지 일단은 기다려 봐야하는 사항이다.

## 2) 유로피아나 (Europeana)

유로피아나 프로젝트 또한 효율적으로 이용허락을 취득하고 고아저작물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보다 배로 소요될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 거래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Vuopala, 2010: 4-15).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파악된 고아저작물의 수는 최소 3백만 부 정도에 달하는데 한 대학도서관의 사례에 따르면 도서관의 디지털화 비용보다 고아저작물 관련 거래비용은 20배 내지 50배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용허락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이용허락과 온라인 접속 가능성을 해결하고 도서관 소장 장서의 대량 디지털 복제를 감당할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과 더불어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저작권법은 각기 차이가 있어서 저작권 화합(Rights Harmonisation)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의회와 연합집행기관은 고아저작물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허락 처리와 전반적인 이용 절차의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sup>18)</sup> 그렇기에 유럽의회가 ‘접근 가능한 권리정보와 고아저작물 등록소(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ARROW)’ 프로젝트를 승인함은 중요성을 갖는다. ARROW의 주요 5가지 목적은 1) 저작권 상태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의 생성, 2) 저작권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럽 문학 작품의 자료수집, 3) 작품의 저작권 상태를 판별하는 지침 제공, 4) 고아저작물의

15) Settlement Agreement, Authors Guild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nc., et al. vs. Google Inc. Case No. 05 CV 8136-JES (S.D.N.Y. Oct. 28, 2008) 참조

16) Amended Settlement Agreement, Authors Guild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nc., et al. vs. Google Inc. Case No. 05 CV 8136-DC (S.D.N.Y. Nov. 9, 2009) 참조

17) S.D.N.Y. Court Opinion <http://www.nysd.uscourts.gov/cases/show.php?db=special&id=115> 참조

18) “Motion for a Resolution on ‘Europeana – the next steps’” (2009/2158(INI)), European Parliament session document, 2010. 참조  
“A Digital Agenda for Europe” COM/ 2010/0245 final, European Commission, 2010. 참조

유럽 등록소(European Registry of Orphan Works: ROW), 그리고 5) 이용허락 센터(Rights Clearance Centre)의 설립이다 (Purday, 2010: 8-10). ARROW를 통해 유로피아나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절차로 고아저작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또 앞으로의 잠재적 저작권 논란을 어느 정도 미연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공주도의 프로젝트로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집행기관 등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진,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이다. 범유럽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법적 해결을 요하는 디지털화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시도도 어려웠을 것이다.

### 3) 한국에서의 고아저작물

한국의 저작권법은 고아저작물에 대한 조치를 제 50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당한 노력”이란 미국이나 유럽의 법에서도 “최선의 노력(Best Endeavors)”이라는 개념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따르는 요구사항은 필요한 절차이지만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절차이다. 그 후의 과정은 법정허락의 형태에 의하여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도서를 우리저작권법상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절차<sup>19)</sup>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21조에 따르면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려는 자는 모든 도서관 장서에 대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조회하거나 신문 등에 광고를

내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관은 이용승인 신청을 일정기간 관보에 게재하고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장관은 승인사항을 일정기간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곧, 최초의 상당한 노력을, 즉, 저작권자의 소재나 신원 파악에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도 이중으로 다시 거래비용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 2. 디지털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 법적문제

복제라 함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로 보건데, 도서관을 디지털화하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한 것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형태와는 맞지 않지만 인터넷상의 디지털도서관의 자료를 컴퓨터 등의 기기에 다운로드 받거나 종이에 인쇄를 한다면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이 된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권도 갖는다. 공중송신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와 콘텐츠의 제공자로서 이를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도서관인데,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단 한 본의 자료로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이 가능하기에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에는 공중송신이 동반된다. 도서관 소장도서 중 저작권존속기간이 만료한 것(Works In Public Domain)을 복제하고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반면, 저작권이

19)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20조(의견제출 등),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참조

유효한 작품에 관해서 한국에서 디지털도서관을 시행할 시,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처럼 서적 전체를 디지털 복제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면 복제권이 문제가 될 것이며, 도서관 서버를 통하여 자료를 이용에 제공하기 때문에 공중송신권의 영역에서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 1) 복제권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이 문제가 되었듯이 디지털복제 및 전송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서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해 도서관에게 허락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1인 1부, 부분적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을 위한 보존용 복제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불가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최종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 또한 있다. 만약 도서의 보존을 위해 도서관이 복제를 한다면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가능하나 이도 디지털 형태로 판매중이 아닌 도서에 제한된다. 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한 복제와 전송도 허용될 수 있는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보관 부수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그 부수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 시 전송한 도서관이 이용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복제와 컴퓨터를 이용하는 복제의 경우 모두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데 있어 걸림돌이다. 전자의 경우 도서의 보존이라는 위급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디지털복제는 불가하다고 명시하여 디지털도서관의 이용자는 정보의 실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다른 도서관과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도서관 및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 제한

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설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관내 이용에 한정된 것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의 저작물의 이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다루는 디지털도서관의 주요 수집, 송신, 전송 등의 매개체가 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이 불가하다면 이 또한 디지털도서관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법적인 도서관의 공간이 인터넷상의 디지털 공간도 포함이 되더라도 동시 열람의 제한은 인터넷의 가장 특징적인 접근의 편리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위반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며 기술과 자원의 낭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용자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적을 것이다. 보상금의 지급주체도 도서관인데, 만약 디지털도서관에서도 현 보상금 지급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고아 저작물 비용과 디지털화 비용에 보상금 비용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별한 운영자금 없이 과연 디지털도서관은 엄청난 비용부담 하에 지속가능할지도 문제가 되는 바이다. 즉, 현행법에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은 디지털도서관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형태가 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 2)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전송의 개념을 포함하는 권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중송신권을 갖는 저작권자는 저작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하고 제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중송신과 관련한 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성대훈, 2010: 28-29). 특히 전자책 산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화된 도서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상

에 복제해 놓았다면 이는 공중송신권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디 인터넷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디지털도서관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다. 현행법에서 보면 디지털도서관의 서비스는 엄연한 공중송신기에 현행법에서 공중송신권의 주장을 한다면 도서관은 책임을 물거나 특정 정보는 배제하고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즉, 디지털화의 결과물을 온라인을 통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중송신권의 관점에서 구글북서치와 같은 서비스는 국내법상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이라고 하겠다(김윤명, 2010: 151-155).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의 범위와 디지털도서관의 공중송신 관련 이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은 점점 도달할 수 없는 과제가 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디지털도서관의 검색 서비스 법적 문제

####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 규정

미국의 구글북서치와 유럽의 유로피아나는 전자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그저 정보를 담아 놓는 식이 아닌 정보의 검색 또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자들이 구글북서치와 유로피아나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장소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서비스는 주로 디렉터리, 인덱스, 레퍼런스, 포인터,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 등을 통해 이루어

어지는데,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서는 검색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대해 저작권법적 침해에 대한 몇 가지 면책 규정(Safe Harbor)을 명시하고 있다.<sup>20)</sup> DMCA의 면책규정은 웹검색엔진(Web Search Engine) 같은 도구를 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자료가 있는 웹상의 장소로 이용자를 연결해 주었을 때, 위반 사실을 모르는 등, 몇몇의 조건 하에 OSP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1%를 차지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검색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구글로서는 구글북서치 프로젝트를 구축함에 있어 자신들의 검색엔진 플랫폼을 쓸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면책규정(Safe Harbor)은 없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경쟁에서도 태도는 것이 현실, 즉, 전자도서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고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처럼 검색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Rubin, 2000). 하지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전자도서관과 그와 병행될 검색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도서관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구축을 한다면 그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자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현행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게 된다.<sup>21)</sup> 반가운 소식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최근에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한국에서도 OSP의 면책규정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사실이다.<sup>22)</sup> 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20) 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512(d); 침해 자료 또는 침해행위를 담고 있는 온라인상의 위치에 이용자들을 참조케 하거나 연결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1) 저작권법 제2조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조건을 충족 시 정보검색도구를 통해 이용자를 자료에 연결시켜 주었을 때 저작권법 위반 책임에서 면책되며, 면책의 조건 중 저작권 침해 행위의 인지 여부도 포함되어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비용 부담 또한 줄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면책규정과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OSP의 창조적, 사회후생기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의 대규모 디지털도서관이 구축된다면 향상된 검색서비스로 더욱 경쟁력을 갖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 2) 전시권 문제

양질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시권의 문제이다. 저작권법상 별도로 전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물이 화체(化體)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전시권<sup>22)</sup>은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리킨다(오승중, 2007). 미술, 건축, 사진저작물의 도화를 검색할 경우, 이용자들은 단순히 저작물에 관련된 설명뿐만이 아닌 도화의 형태로도 작품을 보기를 원할 것이다. 이 때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전시의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저작물을 대신할 수 있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전시권의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보기 목적으로 제공되는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의 경우에는 그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에 있다. 이용자들의 이미지 검색 편의를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큰 이미지를 서버에 복제 후, 이 중간단계의 이미지를 더 작은 이미지로 축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보

이는 것이다. 법원 판례<sup>24)</sup>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이미지를 검색을 위한 썸네일로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사례이다. 곧, 썸네일은 본래 이미지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원본의 대체가능성이 낮아 전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만 아니라, 검색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측면에서 공정한 이용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이미지의 효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크기 내지 형태가 아니라면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서도 저작물로 안내하는 통로에 썸네일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립

### 1. 전자출판의 법적개념과 해석의 확장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매체 기술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적 용어정의나 권리의 범위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관련법규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 이른바 ‘전자적 출판’이나 ‘디지털 출판’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설정출판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전자책의 출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설정출

22) 저작권법 제102조 참조

23)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24)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 참조

판권과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이 신설되었는데,<sup>25)</sup> 전자책에 대한 설정출판권의 입법적 창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일단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해외의 여러 사례로 살펴본 대로 ‘판면권’을 인정하는 규정의 추가이다. 전자출판에 있어서 출판업자는 자신의 출판물 이용을 계속 통제하고 출판물이 불법 복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주어야 전자출판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 할 것이다. 판면권은 현재 저작권법에서 빠져있는 출판사의 창조적 성과물을 인정하는데 있어 첫걸음이 될 것이고 이미 판면권의 인정을 법으로 규정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입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저자-출판업자-유통업자 간에 저작권 등 권리처리의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법적개념 해석의 확장은 전자출판의 도모를 위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위의 입법론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앞에 논의된 랜덤하우스의 사례를 보면 법원은 계약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전자책의 출판은 ‘책’의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전자출판은 가능했지만 이 해석은 전자책의 법적 지위를 상당히 제한하게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법에서 재산권(Property Right)과 분리된 인격권(Moral Rights)이 있듯이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분리된다고 말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공표권은 한번 행사한 후 반복할 수 없다. 즉, 랜덤하우스 사례에서 저자는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출판이 행해지면서 공표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랜덤하우스가 전자출판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청한 것은 저작재산권의 과도한 적용이라 볼 수 있겠고, 또 공표권이 부재한 당사자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주장이라 볼 수도 있다. 전자출판을 오직 저작재산권으로 보도록 하고 저작인격권의 주장, 특히 공표권의 주장과 분리하여 본다면 로제타북스와 같은 전자출판 서비스업자들에게는 전자출판의 기회가 열리고 전자책의 법적 개념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2. 디지털도서관의 실현

### 1) 사례연구: 북토피아

1999년, 한국출판인회의를 모태로 120여개 단행본 출판사들은 종이책과 전자책들을 동시에 판매한다는 큰 목표를 갖고 공동출자하여 ‘북토피아’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1년 (주)와이즈북을 흡수합병한 뒤 국내 전자책 업계에서 1위로 성장했던 북토피아는 600여명의 저작권자와 전자책 사용계약을 확보하고 2만 5000여종의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한 한국 전자출판 업계에서의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영진의 내부 경영권 분쟁과 콘텐츠 저작권료 미지급등의 문제로 출판사들은 더 이상 시간을 제공하지 않게 됐고, 프로그램 관리 소홀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이용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되어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 하에 기업회생절차에 밟게 되었다(머니투데이, 10/05/03). 당시 북토피아는 다수의 출판사들이 공동출자하여 B2B(Business-to-Business), 즉, 사업기관 대 사업기관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는데 이는 B2C (Business-to-Consumer) 즉, 사업기관 대 소비자 간의 거래형태의 종이책 판매에 비해 판매량의 정량화가 쉽지 않다. 도서관에 종이책을 납품할 경우 그 수량과 가격은 정해져있지만 전자책의 계약방식은 권 당 가격을 책정하는 개념이 아

25) 저작권법 제101조의 6 참조

26)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닌 일괄적인 납품의 개념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어떤 식으로 저자에게 분배할 것인지 정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명확한 법적체계의 부재에서 계약상의 모호함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의 반복으로 북토피아는 저작권료 미지급 등으로 출판사와의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다.

## 2) 디지털도서관 실현을 위한 제도의 정비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책 산업이나 디지털도서관 사업의 민간 기반이 튼실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전자책 산업 육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에서도 공공주도의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 이용료 산정 및 지급, 거래비용의 문제 등 여러 저작권법적 쟁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및 여러 제도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출판의 활성화 및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위해서 고아저작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한계를 해결하여야 한다.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이다(이대희, 2010: 22-23). ECL은 상당수 권리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의 특정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CL 제도 하에서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저작물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권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를 원치 않는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집중관리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참여 거절(Opt-Out) 선택안이 주어진다. 동 제도는 애초에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아저작물을 처리하거나 디지털환경과 관련하여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북유럽 일부국가들은 이미 채택하고 시행하는 제도이다(Gervais, 2003: 14-19). ECL은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법률적으로 매우 간단하며 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법률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의 취지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자출판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제권의 범위 또한 새로이 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책의 출현과 관련하여 복제의 의미를 보다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복제의 개념 가운데 전자장치를 통하여 컴퓨터 등의 데이터 인식·처리가 가능한 기기에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는 행위까지 의미를 확장하고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디지털도서관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고 컴퓨터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읽는 과정에서 공중송신권 및 전송권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라는 범문에 전송권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디지털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의 효과적인 열람을 가능토록 공중송신권의 범위와 권리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저작권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법리(Fair Use Doctrine)’의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김윤명, 2010: 154-155). 법적 적응력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정이용법리의 도입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이용과 같은 일반조항의 입법론적 의의는 지금과 같이 사회가 급변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변하는 환경에서 특정 기준으로

특정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입법이 갖는 한계점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출판이나 디지털도서관이 가져올 예견하지 못하는 사항을 공정이용법리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일반조항은 각각의 사건과 재판에 따라 적절한 적용이 판시되어지는데 이때 법관의 개인적·주관적 윤리관이 아닌 이성적·객관적인 공정성과 타당성에 기준을 두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법관은 일반조항의 운용을 통하여 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러한 법관의 기능을 통하여 일반조항의 내용은 충실해질 것이다(곽윤직, 2002). 이와 같이 일반조항은 궁극적으로 법원, 구체적으로 당해 재판부의 담당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저작권법상 일반조항은 공정이용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존의 제한과 예외가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이용법리의 도입은 용인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 여겨진다(이호흥, 2005). 추상적인 규정이지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지므로 일반조항을 도입하여 디지털도서관의 운영에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에 내포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작물관리단체가 필요하다. 종이로 된 책과는 달리 기술적인 기반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은 오히려 종이책 보다 쉽게 누가 언제 이용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가 용이해질 수 있다. 유사한 기술의 적용 사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기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기기 및 플랫폼 제공자에게 이용료를 내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내 구입(In-App Purchase, IAP) 측정 기술이 있는데, IAP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 측정이 되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수입에 따라 이용료를 내게끔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술을 전자출판된 자료와 디지털도서관에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해법을 도서관에 직접 데이터를 구축해서 대출시마다 일정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이용료의 징수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각각의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그 비용과 기술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하의 프로젝트가 되어야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물이용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징수 또한 기업체 보다는 공공관리시설, 즉,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책 제작업자로서는, 제작하고자 하는 전자책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재 자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 이용료의 분배도 그러한 저작권자를 알아야 가능할 것인데, 소재가 되는 저작물이 다수(예컨대 수만 또는 수십만)인 경우에 다수의 저작권자를 모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협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제작 자체보다도 그 소재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북토피아의 사례에 서처럼 아직은 기업주도의 디지털도서관 실현이 어려운 한국에서는 유럽의 유토피아나와 같이 공공주도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저작권이 일정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sup>27)</sup> 저작권법 제7장 참조 에 의하여 위탁관리 될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러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시하는 저작

27) 저작권법 제7장 참조



물이용료의 합리적인 산정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 V. 결론

장서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성장한다.

- 오거스틴 비렐(Augustine Birrell)

조지프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기술의 발달에 경제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양식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이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며 동시에 인간의 역사, 사회의 관행, 사람들의 관습처럼 오래된 것 또한 보존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재건’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그동안 잘 활용되었던 틀을 현재의 용도에 맞게 적응시키는 것이다. 전자책과 디지털도서관은 이러한 적응의 일환인 것이다. 그리고 창조적 재건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보민주화’를 꿈꿔볼 수 있다.

공공의 디지털도서관이 ‘정보민주화’ 촉매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며 용이한 전자정보원 검색, 이용자 정보화 교육, 특색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양질의 전자정보원 선정,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개발 등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의 도서관의 역할인 자료의 수집, 보관 및 이용의 제공으로 한정하는 것은 디지털 자원의 낭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북서치에서도 한계로 지적되었듯이,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 물론 법정허락제도를 통하여 저작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 비용적 번거로움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하여 저작권제도가 훼손되고 기존의 출판업계는 아무런 보호나 보상장치가 없이 커다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저작자와는 별도로 출판사들에게 별도의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의 출현이 새로운 매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도 전자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출판업계가 전자책의 출현에 대하여 우려만할 일은 아니다. 출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적절히 마련하여 전자출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검색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포털사이트와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나 수요의 충족은 사회적 후생을 장려하는 일이며 그 효과는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작지 않다고 본다. 제도의 개선으로 온라인자료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로써 저자의 확대와 독자층의 확산이 일어날 것이고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 내에서의 권력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 권력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닌 정보와 지식에서 비롯한 힘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정보의 장을 만들어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것이 디지털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방안이 추구하는바 라고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곽동철 (2000). “전자도서(eBook) 유통과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 55(2): 3-24.
- 곽윤직 (2002).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 김기태 (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2(2): 127-138.
- 김문환 · 박성호 (2001). “디지털 환경하의 설정출판권

- 제도 재검토.”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김윤명 (2010). “구글 북서치와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의 법률문제.” 「정보관리연구」, 41(2): 133-159.
- 김중환 (1999). 「법률학사전」. 서울: 법문사.
- 김효혜 (2010). “‘북토피아’ 공개매각 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5월 3일.
- 디지털타임스 (2011). “전자책, 범부처 육성책 내놔야.” 5월 31일.
- 문화체육관광부 (2000). 「한국 전자책(eBook) 산업 발전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호 (2002). “‘전자책’과 설정출판권 제도.” 한양대학교 간행위원회 편, 「강의중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911-922. 서울: 교학연구사.
- 박익순 (2009). 「출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 출판계약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원근 (2001). “전자책의 현황과 권리처리 실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검 : 전자책을 중심으로」, 30-55.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산은경제연구소 (2009). “E-Book의 재부상과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 전망.” [http://rd.kdb.co.kr/jsp/re/content/REIss0101\\_6033.jsp](http://rd.kdb.co.kr/jsp/re/content/REIss0101_6033.jsp). (검색일: 2011.10.18).
- 성대훈 (2000). 「국내 전자책(eBook) 서비스업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대훈 (2010). “전자책 산업의 저작권 쟁점 사항과 해결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3(1): 26-37.
- 오승중 (200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이대희 (2010). “전자출판 및 디지털도서관 실현 방안.” 「계간 저작권」, 23(1): 4-25.
- 이종문 (2004).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론」. 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이호홍 (2005).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충돌규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2009 해외콘텐츠시장조사」.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서울: 명문프리카.
- Arms, William Y. (2000). *Digital Libraries*. Cambridge: MIT Press.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2010). “BookStats Publishing Formats Highlights.” <http://publishers.org/bookstats/formats/>. (Retrieved on October 18, 2011).
- Gervais, Daniel J. (2003). “Application of an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Regime in Canada: Principles and Issues Related to Implementation.” [http://works.bepress.com/daniel\\_gervais/29/](http://works.bepress.com/daniel_gervais/29/). (Retrieved on October 29, 2011).
- Lesk, Michael. (1997). *Practical Digital Libraries: Books, Bytes & Bucks*. Waltham: Morgan Kaufmann Publishers, Inc.
- Purday, Jonathan. (2010).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nd Europeana, Europe’s Digital Library, Museum and Archive.”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10(3): 174-180.
- Rubin, Richard E. (2000).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 Vuopala, Anna. (2010). “Assessment of the Orphan Works Issue and Costs for Rights Clearance.”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activities/digital\\_libraries/doc/reports\\_orphan/anna\\_report.pdf](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activities/digital_libraries/doc/reports_orphan/anna_report.pdf). (Retrieved on October 17, 2011).